E - 42 - 2013

전기도금산업의 전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

2013. 8. 3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KOSHA GUIDE <u>안전보건기술</u>지침의 개요 E - ?? - 2009

o 작성자 :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김두현 교수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o 제·개정 경과

- 2010년 8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2013년 7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EIS 6 Electrical systems in the electroplating industry
 - HSG85 Electricity at work: safe working practices
 - IEEE 100 Standards terms 17th edition
 - 안전보건기술지침(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
 - 안전보건기술지침(전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)
 - KS D 9520 도금 작업 설비 표준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3년 8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전기도금산업의 전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전기도금산업과 관련된 전기시스템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장과 장비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전기도금산업에서 사용되는 저전압 대전류의 전기시스템에 대한 작업방법, 보수 및 정비에 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전기도금"이라 함은 표면보호나 장식을 목적으로 전기분해를 이용하여 음극 물체의 표면에 밀착성이 있는 금속 피막을 전착하는 것을 말한다.
- (나) "활선"이라 함은 설비가 전기 에너지원에 연결됨으로써 전압이 인가된 상태를 말한다.
- (다) "고장"이라 함은 어떤 품목이 요구되는 기능을 실행하는 능력의 상실을 말한다.
- (라) "활선근접작업"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에 속하지 않는 노출된 충전전선 또는 기기 등의 접근한계 내에서의 작업을 말한다.

E - 42 - 2013

- (마) "활선작업"이라 함은 노출 충전된 전선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,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 기기로 접촉 하는 것을 말한다.
- (바) "유자격자"라 함은 전기설비의 시공·운전 및 기타 전기작업에 관련된 국가 기술자격 및 공인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전기도금에 사용되는 전기설비

- (1) 도금 작업장은 고온, 다습, 부식성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작업장 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철저한 보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(2) 직류전원 설비
 - (가) 직류전원의 선정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① 지정된 정격 전압 및 전류
 - ② 정밀한 전압 조정
 - ③ 과부하에 대한 보호 장치
 - ④ 전압 변동률
 - ⑤ 내부식성
 - ⑥ 보수 점검의 용이성
 - ⑦ 직류 파형과 부하에 대한 도금의 적합성
- (나) 도금용 발전기, 정류기, 그 밖의 전원 설비는 건조된 장소에 설치하고 절연저항은 1 MQ 이상이어야 한다.

E - 42 - 2013

- (다) 전류는 도금조에 도금할 물품을 가득채운 상태에서 음극의 전체 표면적에 최대 전류 밀도를 곱하여 최대 전류를 구한 후 손실 전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(라) 전압은 전원에서 도금조까지의 거리에 따른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(3) 수배전 설비에 손상을 주는 습도, 부식성 가스 등의 요인은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(4) 직류 전류용 배전반에는 전압계, 전류계, 전압조정기,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정류기의 보수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보수한다.
- (가) 파일럿 램프의 단선 확인
- (나) 전압계, 전류계 지침의 이상 여부
- (다) 검전기를 사용하여 누전 여부 확인
- (라) 주변압기, 리액터의 온도 상승 확인
- (6) 발전기와 도금조를 접속하는 전선의 굵기는 안전 전류값 이상이어야 한다.
- (7) 직류 전원 배전반 내에는 교류 100 V 이상의 개폐기를 병행설치하지 않아야 한다.

5. 전기시스템의 관리 방법

5.1 전기시스템 확인

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거나 연결이 될 수 있는 설비나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. 이때, 전기도금 설비, 전원, 주배전반 그리고 다양한 공장설비에 공급하는 배전시스템을 포함한다.

E - 42 - 2013

5.2 조사

- (1) 사용상의 상태와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기시스템과 설비에 대하여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.
- (2) 조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공급자/제조자 또는 설비 명판으로부터 얻는 전기설비의 물품목록과 세부사항
- (나) 제조 표준의 세부사항
- (다) 제조년도와 설치년도
- (라) 작동 전압과 전류
- (마) 습기 등의 침입에 대한 보호 대책을 위해 필요한 IP 분류
- (바) 설비에 대한 회로도 또는 매뉴얼의 기록사항과 수정사항
- (사) 설비의 연결 방법과 배열을 보여주는 전기시스템도
- (아) 고장수준과 설치되어 있는 보호장치 정보가 있는 전기시스템도
- (자) 불충분한 작업공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 설비와 공장의 배치도면
- (차) 회로 식별 및 설비의 조작/공급 대상
- (카) 격리수단과 위치
- (타) 시스템의 접지 배열
- (파) 케이블 유형과 사이즈

E - 42 - 2013

5.3 보수작업 우선사항

- (1) 주의가 요구되는 설비/상태와 시스템의 잘못된 부분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.
- (2) 조사는 보수작업 계획의 준비와 우선순위를 정한다.
- (3) 사고의 위험성이 클수록 더 높은 우선순위의 보수조치가 필요하다.

5.4 보수작업 계획

- (1) 보수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규모를 설정한다.
- (2)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- (가) 노출된 도체가 있는 설비를 작동하는 부적합한 간선
- (나) 부적합한 접지
- (다) 부적합한 고장 보호설비
- (3) 낮은 위험 상태는 기본 안전수칙에 따라 처리한다.

5.5 작업 방법

- (1) 작업 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위험한 활선작업이나 활선근접 작업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작업 방식의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.
- (2) 활선작업이나 활선근접 작업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"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" 제 5항(전기 작업지침의 안전성 평가)을 준용하며, 반드시 지켜야 한다.
- (3) 설비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경우 전기시스템에서 발견되는 고장은 작업 방법을

E - 42 - 2013

결정하는 감독자가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, 필요한 예방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
5.6 전기시스템의 정비

- (1) 위험 예방을 위해 전기시스템을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고 관련 작업을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2)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는 정기적으로 수행되고, 효과적인 정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 절차를 도입한다.
- (3) 정비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 대상, 방법, 빈도, 그리고 작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4) 정비의 빈도와 방법은 사용 경험, 조사 및 보수에서 얻은 시스템 상태의 관련 지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.
- (5) 정비 작업자는 숙련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다음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(가) 모든 적합한 진단과 건전성 시험의 수행
- (나) 진단 및 시험 결과의 이해
- (다) 제조사 매뉴얼, 안내지침 및 표준에 포함된 임의의 안내서에 기초한 정비 실시
- (6) 정비 요구사항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작업 절차를 수립한다.
- (가) 작업 계획의 준비사항
- (나) 수행된 항목의 기록 방법
- (다) 시험 결과 제공
 - ① 시스템과 설비의 상태 제공 및 설비의 교체시기 제공
 - ② 부적합하고 남용되는 설비 식별

E - 42 - 2013

③ 작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제공

6. 사업주 및 감독자의 의무

- (1) 전기도금 작업장의 전기시스템에 존재하는 위험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자의 위험 작업에 따라 안전 교육 내용을 정하고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 및 감독자는 활선도체 근처 또는 활선근접작업의 경우 작업자의 작업 방법에 대하여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고 유자격자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게 한다.
- (3) 사업주 및 감독자는 시스템 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유자격자의 조언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숙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자격자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.